

문서번호	교육지원과-27 97
결재일자	2016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청소년복지팀장	교육지원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조유미	곽노성	정연욱	고한석	02/05 하철승
협 조				



<p><b>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</b>  <b>2016년도 아동복지사업 지원 계획</b></p>
---

2016.2.5.

강 북 구

#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2016년도 아동복지사업 지원 계획

2016년도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방향과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간  
경상사업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성장기 아동의 안정적 인성발달과  
학습보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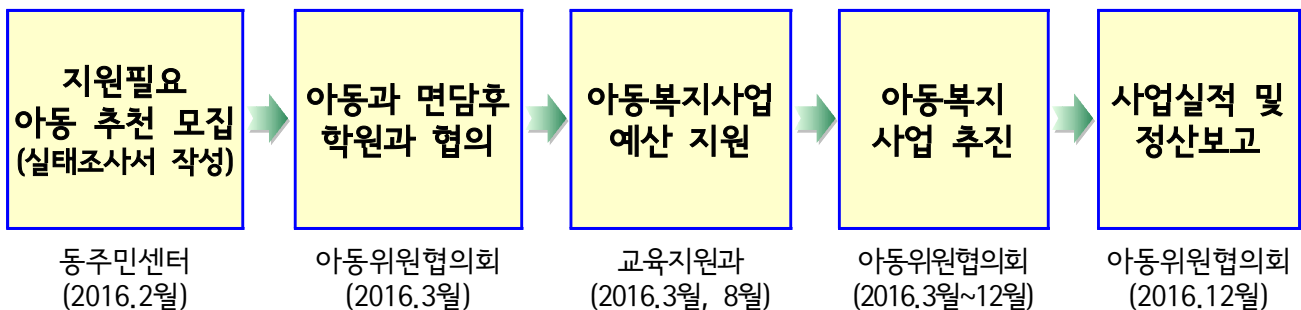
## I 추진 근거

- 아동복지법 제59조(비용의보조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

## II 사업 개요

- 지원기간: 2016. 3월 ~ 2016. 12월
- 지원예산: 12,000천원
- 지원대상: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
- 지원사업: 아동복지사업(학습지원)
  - 관내 초등학생중 학습의욕과 열망은 높으나 집안과 주변여건의 취약함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내 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자율의사에 맞는 학원수강료 지원

### ■ 지원절차



### III

## 세부 추진 계획

### ■ 세부내용

- 아동 선정 방법
  - 각 동별 저소득층 초등학생 1명씩 추천받아 총 13명 지원
- ※ 미신청동은 교육지원과 드림스타트팀에 의뢰하여 추가 접수 예정
- 추천아동과 지역학원의 연계
  - 아동별 다니고 싶은 학원을 조사하여 해당학원에 학원비를 대신 납부하고 영수증으로 확인
- 아동 지원기준액: 월 110천원 내외
- 2016년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자료 및 사업계획서 참조<붙임1,2>

### ■ 소요예산

- 소요예산: 14,400천원(구비 12,000천원, 아동위 자부담 2,400천원)
  - 학원비: 110천원 × 13명 × 10개월 = 14,300천원
  - 학용품비: 100천원 × 1set = 100천원
- 예산과목: 교육지원과, 청소년보호 및 육성, 청소년선도 보호육성,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, 민간이전, 민간경상사업보조

### IV

## 행정 사항

### ■ 학습지원 대상 아동 추천 ..... 동 주민센터

- **2016. 2. 22.(월)까지** 각 동별 저소득층 초등학생 1명씩 추천 및 실태조사서(붙임3 참조) 작성 제출

### 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.....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

- 예산 지급 방법
  - 반기별(3월, 8월) 두차례로 나누어 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
- 예산 집행 방법
  - 학원비 지급 등은 보조금전용결제카드로만 가능하며, 회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

- 강북구청 지원 예산액의 20%이상을 자체부담으로 집행
- 정산 시기 및 방법
- 집행금액에 대한 정산은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되, 실적추진 보고서는 12월 한차례만 제출

- 붙 임
1.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정례회의자료 1부.
  2.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첨).
  3. 실태조사서 1부. 끝.